

회

보도자료

(2008, 10, 31)

배포처 : 기획팀 **☎** 02-788-4524 www.nars.go.kr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개편의 목적·기준 및 효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 선행되어야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형성)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입법부의 과제』 현안보고서를 발간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각종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들이 다양한 개편기준을 근거로 각기 다른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개편안들간에 개편의 목적 · 기준 및 효과 등에 대한 사회 적인 합의절차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 보고서는 먼저. ① 현행의 지방행정체제는 지방행정계층 간의 업무중복에 따른 갈등과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 행정수요를 담당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② 또한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생활권이 확대됨으로써 실질 생활권과 지역행정구역의 불일치가 발생 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구, 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 등이 큰 격차가 나는 등의 문제로 인해,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 0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이와 같은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나 행정계층의 변화나 전면적인 행정구역개편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o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서 도폐지 및 시·군 통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실현방안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하고, 국민정서를 감안 해서 장기과제로 전환되었음
 - ㅇ 현 정부 들어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국정과제에 추가됨으로써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 되고 있음.
 - 현재까지 제시된 주요 개편안을 보면 첫째, 17대 국회 지방행정개편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광역자치단체 폐지 및 시·군통합안이 있고, 둘째, 초광역지방정부안으로서

기존의 시도를 초월한 인구 약 5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형성하는 개편안이 있으며, 셋째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는 안으로서 현재 광역시는 도의 관할에 두고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 등임

- □ 현재 논의되는 개편안들에 대한 보고서의 분석에 의하면,
 첫째, 개편안들은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목적과 당위성이 분명하지 않고,
 ② 개편안의 효과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제시가 미흡하며, ③ 개편안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동일한 평가기준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둘째, 지금까지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민주성, 행정 효율성, 생활권 일치등 다양한 개편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개편 기준별로 최적의 개편안이다르게 도출되고 있어서 개편기준의 선정과 더불어 개편기준별 우선순위를 매기는 작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따라서 바람직한 개편안 마련을 위해서는 <u>행정구역의 개편목표, 개편원칙</u> 및 개편기준을 먼저 합의하는 작업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 18대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칭)'를 설립하여, 본 특위에서 행정체제 개편방향, 개편기준, 추진절차와 시기 등에 대한 논의와 협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 □ 또한, 국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시 제·개정되어야 하는 법률을 사전에 검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편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 자치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정부간 기능 재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된 다수의 현행 법률도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 ※ 발간된 보고서는 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의 '자료마당'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첨부자료: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입법부의 과제」

문의 :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사행정팀 입법조사관 하 혜 영(연구책임, 행정학박사) 02-788-4546